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 등·초본 업무를 취급토록 함에 따른 지침 마련

2. 주요골자

○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 (안 제2조 제2항)

3. 관계법령

○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및 제45조의 3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제1항의 기타 사무중 법 제18조 영 제45조
및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 교부에
관한 사항은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2조 (권한의 위임) ①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 1 ~ 4 (생략) (신설)	제2조 (권한의 위임) ①----- ----- ----- ----. 1 ~ 4 (현행과 같음) ②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제1항의 기타 사무중 법 제18조 영 제45조 및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 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 교부 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.